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II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, 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2호아목	승인취소			
2의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2호자목	허가취소			

별표 2 II에 제15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의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1호,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2호차목	허가취소			
--	----------------	------	--	--	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